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도로법」상 과태료 중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.

3. 주요내용

○ 「도로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대상
(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2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

-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

·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
→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
-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

·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
→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
○ 「도로법」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
(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4호) 삭제

-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

·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, 수리,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

-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

·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10. 06 ~ 10. 26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「도로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대상 안 제3조 제1항 제1호 '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'를 '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'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'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'를 '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'로 개정하고,「도로법」상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대상 안 제3조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보완·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